

정관

포항시민간스포츠문화재단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1. 본회(재단)는 명칭은 포항시민간스포츠문화재단 라 칭한다.
2. 본회(재단)의 슬로건 ... 화합 / 열린 스포츠문화
3. 본회(재단)의 모토는 포항지역인의 열린 봉사와 사랑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선량한 시민으로 다음과 같다.
2. 지역사회의 스포츠 및 문화를 위한 적극적 관심을 갖는다.
3. 지역 스포츠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4. 불특정다수를 위해 활동하며 상호존중관계 유지한다.
5. 정당과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공익에 진지하고 자유토론을 한다.
6.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회원 상호간에 재정적 댓 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지역 민간 생활체육을 위해 봉사하며, 상업, 산업, 전문 직업, 공공사업에 있어 개인적인 노력에 있어서 높은 도덕적 수준을 증진한다.
7. 지역 문화 활동에 앞장선다.



제 2장 회 원

제 1 조 (회원)

1. 본회(재단)의 정관 제2의 목적에 찬동하고 지역(타 지역포함)인자로서 덕성과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로서 정당한 직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 : 본회(재단)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고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회원을 말한다.

나. 명예회원 : 지역사회(공공기관)에서 추천(희망)하는 인 덕망이 있는 분 추천 또는 희망하는 인

3. 회원 직종분류

본 회의 회원자격을 직종별로 분여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을 선정 할 때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가. 직종분류는 사업 또는 전문직업의 주요부문으로 한정한다.

제 2 조 (입회)

신입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입회를 할 수 있다.

1. 소정 양식 : (입회원서 ,이력서)에 의하여 이사1인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1통을 첨부하여 회원 확충분과위원회에 접수 하여 회원 확충분과위원장이 주관에 이를 심의한다.

2. 심의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의가 없으면 표결 처리한다.

3. 표결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월례회에 보고하며 다음 월례회 입회 선서한다.

4. 신 가입회원은 가입승인 날로부터 10일내에 회비 및 각종 입회 절차를 총무(사무국장)에게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제반 절차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회원자격이 인정 되지 않는다.

5. (재 입회) : 재 입회 가입자는 신 가입회원에 준한다. (단 6개월 이내 재 입회를 원할 시 종전 회원으로 자격 부여한다.)

6. (퇴회) : 회원의 퇴회는 회장(이사장)이나 총무(사무국장)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 이사회에서 수리하며 효력이 발생한다.

7.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가. 정기 회의에 정당한 사유 통보 (사유서 OR 구두)없이 3회 이상 연속 결석한 회원

나. 미납금 통보서 발부하여 60일 이내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회원

다. 본 회의 총칙과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와 사회적 평판이 나쁜 회원

라.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간과 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8. 총무(사무국장) 제 4조 7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 제적여부를 결정한다.

9.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2/3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3 조 (회비)

- 정기회비는 월5.000원으로 하며, 각종 의무 금, 출연금, 특별회비는 별도 납입한다. 단 후원 및 회비는 자율적임 한다. (은행 간 자동계좌이체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 회비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혹은 부득이한 행사가 당면했을 경우에는 이사 재적 2/3 출석에 출석이사 2/3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임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1 조 (임원의 구성)

- 본 회의 임원은 회장(이사장), 명예회장, 직전회장, 연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 이사 한다.
-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여 임명한다.



제 2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이사장)

가. 회장(이사장)은 본 재단의 최고 집행자이다. 이사회 및 본 재단의 모든 회의를 주제하며 이사회 및 본 회의 정규 및 임시회합을 소집한다.

나. 본 회의 상설 및 특별 분과위원을 임명하고 위원회가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며 정규적으로 보고토록 위원장과 협조한다.

라. 선거가 공정하게 공고, 소집되고 실시되는지 유의한다.

2. 직전회장

가. 직전회장은 본 회의 회합에서 회원 및 내빈을 공식적으로 영접하며 본 회의 봉사 최고회원으로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나. 본 회의 운영전반의 회의에 참석하여 행동한다.(임원자격)부여

3. 역대회장

가. 본 회의 모든 행사시 내빈을 영접하고 전회장의 예우한다.

(포상으로 명예회장으로 영접하여 예우 포상한다.)

4. 부회장

가. 회장이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과 동등한 권한으로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5. 사무국장

가. 회장과 이사회의 감독과 지휘 하에 다음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나. 정규 회 보고 및 기타보고 제출한다.

다. 각 정회 및 분과 위원 회 안건 총괄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라. 본 회의 전반에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6. 재무

가. 본 회의 자금을 관리 회장(이사장) 승인 시 집행한다.

나. 사무국장 및 이사회와 협조한다.

다. 정규. 월례회 회비 및 보고 한다.

7. 감사 (별정직)

가. 본 회의 재무 및 회계 총괄 감사한다.

제 3 조 (임원의 임기)

1. 임기 : 회장(이사장) / 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하다.

사무국장이하는 2년으로 한다. 연임가능하다.

이사는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가능하다.

2. 취임 : 본 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은 매년 월 일에 취임하고 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 임무를 수행 한다.

3. 해임 : 임원도 적당한 이유로 전회원이 2/3 이상의 찬성 투표로 해임 할 수 있다.

4. 결원 : 회장이 결원되면 부회장이 승계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180일) 이상 경우 이사회(운영)에서 재 선출한다.

다른 임원이 결원 시 이사회 이사 중에서 (추천) 잔여 임기 임명

수행한다.

제 4 조 (임원의 보수)

1. 회장(이사장)님 및 다른 임원들은 봉사자 입각하여 무보수로 활동 한다.

2. 사무국장 (총무)

본 회의 발전과 협력차원 봉사자 입각하여 무보수 활동한다.

제 4장 정례회의

제 1 조 (정례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총회 2. 임시회의 3. 이사회 4. 월례회 5. 분과위원회

6. 주년행사

제 2 조 (총회구성) 본 회의 전 회원이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 3 조 (총회소집) 본 회의 매년 월 경에 회장(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회장(의장)이 된다.

제 4 조 (임시회의) 소집은 이 각항에 해당 시 소집한다.

첫째. 회장(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둘째. 이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사장)이 지체 없이 소집 한다.

셋째. 총회 을 소집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항과 일시 장소 기재하여 총회 소집 7일전 까지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 5 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 한다.)

-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칙 개정의 승인
-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③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④ 임명직 임원의 인준

⑤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 (이사회) 이사회는 매월 일로 정하고 시간과 장소는 회장(이사장)과 상의하여 총무가 연락한다. 회장(이사장)과 임원 5명 이상의 효과가 있을 때는 이를 소집한다. 당일이 일요일시는 다음 날로 한다.

제 7 조 (이사회 구성 및 임무) 이사회는 회장(이사장), 직전, 부회장 당연직으로 한다.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 회(재단)의 집행부로서 총회 및 월례회에 상정할 사항의 심의 및 의결

② 회원가입 및 전직, 퇴회, 제적 등의 의결

③ 본 회(재단)의 비용 지출을 승인한다.

④ 제반장부와 회계를 년 2회 필요시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한다.

⑤ 이사회, 월례회 등의 일시와 장소를 소집하게 한다.

⑥ 제반 운영 세칙의 개정 및 제정

⑦ 기타 본(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8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인 때는 부결로 결정한다. (특별한 사항은 제외한다. 본 회(재단) 회장(이사장)이 거부하며 제청할 경우 다시 한 번 심의 한다.)

제 9 조 (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일로 정하고 당일이 일요일시는 다음 날로 한다. 시간과 장소는 이사회(기본은 본 회(재단) 사무실) 하되,

이사회에서 정하고 필요시는 일과를 이사회에서 변경 할 수 있다.

월례회에서는 지역사회와 민간스포츠문화 와 사업상의 각종문제를 토론하고 저명인사의 초청강연으로 심신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 10 조 (분과위원회) 본 회(재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둔다.

① 진행 분과위원회

② 봉사사업 분과위원회

③ 홍보 분과위원회

④ 회원확충 분과위원회

제 11 조 (분과위원회 임무)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례회와 겸할 수도 있다.

② 모든 안건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고 다음 월례회 때 보고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안은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작성하여 월례회에서 발포한다.

④ 진행 분과위원회 : 월례회 및 모든 행사 부분 담당한다.

⑤ 봉사 사업 분과위원회 : 모든 행사 진행 부분(자원봉사자) 담당 한다.

⑥ 회원확충분과위원회 : 회원확충 및 취미모임을 담당한다.

제 12 조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3 조 (기념행사) 본 회(재단) 기념행사는 매년 ~~에 개최하고 본 회의~~ 목적과 윤리강령 및 본 회(재단)의 연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모든 회의와 겸 할 수 있다.)

제 14 조 (집회의 성원) 본 회(재단)의 집회의 성원은 재적회원의 과반수로 하고 집회는 개최 2일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긴급 시는 예외로 할 수도 있다.

제 5 장 선 거

제 1 조 (임원의 선거)

① 회장단은 다음 절차에 의거 선출한다.

. 매년 월 이사회에서 회장(이사장) 전형위원회를 구성시킨다.

. 전형위원회 의장은 직전회장(이사장)이 된다.

. 매년 3월 월례회에서 전형위원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회장(이사

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

. 회장(이사장) 후보자는 부회장을 거친 회원 중에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회장은 임원을 역임한 회원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 자문을 구해 회장(이사장)이 지명한다.

③ 이하 사무국 임원은 회장(이사장)의 승인을 구해 사무국장이 지명한다.

2. (당선자 결정) 선거는 출석한 유자격자의 투표로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6장 기 타 규 정

제 1 조 (회계년도) 본 회장(이사장)의 회계연도 11월에 한다.

제 2 조 (의사진행) 총회 / 이사회 / 분과위원회 회순에 따른다.

제 3 조 (개정)

① 본 회(재단)의 회칙은 이사회의 제안으로서 회원2/3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 7장 단 체 해 산 시

제 1조

-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 8장 부 칙

제 1조

-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9장

제 1조

- ① 본 회칙의 미비점이나 집회의 모든 의사진행 회(재단)의 운영에는 표준 위 부칙에 따른다.
- ② 본 회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③ 본 회칙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④ 본 회칙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